

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(건설기계)강제 견인증

○차량번호 :

○성 명 :

○견인일시 : 201 년 월 일(시 분)

○견인장소 :

○견인공무원 :

○연 락 처 :

○위 자동차(건설기계)는 지방세체납으로 인하여 201 년 월 일
에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견인 하였습니다.

○201 년 월 일까지 체납된 지방세 및 기타 처분비(견인비용 등)
를 납부하고 인도하여 가시기 바라며, 만일 기한 내에 별도의 통지가 없는
경우 압류자동차(건설기계)에 대한 권리행사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매
후 체납된 지방세에 총당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인 천 광 역 시 장



※견인자동차(건설기계) 보관장소

- 장 소 : 오토마트 인천 보관소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7

(오류동 아라뱃길 인천터미널, 일반화물 부두 내)

- 전화번호 : 032-578-0442

【보관용】 인천광역시 세정과, ()구청 세무과

○차량번호 :

○성 명 :

○견인일시 : 201 년 월 일 (시 분)

○견인장소 : 구 동

○인도가능시간 : 201 년 월 일